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 어려운 법령 그림 등으로 본다

-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규 시각 콘텐츠 290개 제공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290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표·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290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 「농지법」 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 22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여 건축·노동·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다.

법제처는 이번 290개의 콘텐츠 제공 이후 11월 중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국민연금법」 등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의 추가 콘텐츠 190여 개도 12월 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어렵고 복잡한 법령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법령용어순화팀	책임자	팀 장	이상현	(044-200-6852)
		담당자	사무관	전병희	(044-200-6855)



참고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콘텐츠 예시

1 「농지법」 제2조제1호 “농지의 범위”

대상 조문	시각 콘텐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이 콘텐츠는 2025년 1월 3일 기준이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

대상 조문	시각 콘텐츠
제5조(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이 콘텐츠는 2024년 8월 21일 기준이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하는 시설”

대상 조문											
제24조(소독을 해야하는 시설)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 · 시외버스 · 전세버스 · 장의 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각 콘텐츠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table border="1"> <thead> <tr> <th>소독횟수</th> <th>해당 시설</th> </tr> </thead> <tbody> <tr> <td>4회~9월 1회 이상 / 1개월</td> <td>숙박업소 : 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위탁급식영업을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버스, 항공기, 여객선, 여객자동차, 공항시설, 대합실, 역사 등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통시장 등 병원급 의료기관</td> </tr> <tr> <td>10회~3월 1회 이상 / 2개월</td> <td>집단급식소 : 100명 이상 위탁급식영업 식품접객업소 : 연면적 300㎡ 이상 기숙사, 합숙소(50명 이상), 학교, 학원 (연면적 1,000㎡ 이상)</td> </tr> <tr> <td>4회~9월 1회 이상 / 2개월</td> <td>공연장 : 객석 수 300석 이상 사무실용 및 복합용도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 : 50명 이상</td> </tr> <tr> <td>10회~3월 1회 이상 / 3개월</td> <td>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td> </tr> </tbody> </table> * 이 콘텐츠는 2024년 9월 15일 기준으로,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제처		소독횟수	해당 시설	4회~9월 1회 이상 / 1개월	숙박업소 : 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위탁급식영업을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버스, 항공기, 여객선, 여객자동차, 공항시설, 대합실, 역사 등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통시장 등 병원급 의료기관	10회~3월 1회 이상 / 2개월	집단급식소 : 100명 이상 위탁급식영업 식품접객업소 : 연면적 300㎡ 이상 기숙사, 합숙소(50명 이상), 학교, 학원 (연면적 1,000㎡ 이상)	4회~9월 1회 이상 / 2개월	공연장 : 객석 수 300석 이상 사무실용 및 복합용도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 : 50명 이상	10회~3월 1회 이상 / 3개월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소독횟수	해당 시설										
4회~9월 1회 이상 / 1개월	숙박업소 : 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위탁급식영업을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버스, 항공기, 여객선, 여객자동차, 공항시설, 대합실, 역사 등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통시장 등 병원급 의료기관										
10회~3월 1회 이상 / 2개월	집단급식소 : 100명 이상 위탁급식영업 식품접객업소 : 연면적 300㎡ 이상 기숙사, 합숙소(50명 이상), 학교, 학원 (연면적 1,000㎡ 이상)										
4회~9월 1회 이상 / 2개월	공연장 : 객석 수 300석 이상 사무실용 및 복합용도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 : 50명 이상										
10회~3월 1회 이상 / 3개월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